

Zoom-in Trade



- ▶ COVER STORY: 환율전쟁 1
- ▶ FTAs NEWS: 한-EU FTA 내년 잠정발효의 배경과 시사점 2
- ▶ VOICES FROM THE FIELDS: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4
- ▶ WHERE IS GRACE CHANG? 6
- ▶ ABOUT WRITERS 6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환율 전쟁



최근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미국과 중국의 환율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 수가 있다. 무심코 흘러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귀를 곤두세워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경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게 사실이다. 모든 세계 언론이 두 국가의 '환율갈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수출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는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민감해져야 한다. 그럼, 민감해진 촉각으로 미국과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자.

미 달러화는 미국의 오랜 적자(무역적자, 재정적자)로 인해 지속적인 가치하락이 이어져 오고 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큰 약진이 없는 유로화와는 달리 엔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계속 상승했으며,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거대한 외화가 유입되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위안화가 평가절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고정하는 정책을 고수한다. 이에 따라 달러화의 가치가 급격히 낮아졌으며, 엔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반면, 위안화는 여전히 변동이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환비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다시

말하면, 미국 물건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세계 시장의 중국제품가격이 높아져야 하나, 중국이 고정 환율 정책이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게 평가절상 압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일본도 예외일 수가 없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엔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 Made in Japan 제품들의 세계시장 가격경쟁력이 곤두박질치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물품판매 상황이 악화되면 자연스럽게 생산이 줄고, 이에 따른 고용 역시 줄게 되어 경기불황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막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저가제품 생산 및 수출에 주력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며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화를 올리면 중국제품의 가장 큰 경쟁력인 제품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Quality 위주의 제품생산이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중국에게 Low price 정책만큼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수입원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볼 때 미국, 중국, 일본의 신경전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

국제적 영향력의 미국, 막대한 외화자본의 중국, 만만치 않은 일본 3 국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직접적인 환율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럼 미국의 의도대로 위안화가 절상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간단히 생각하면, 중국물건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만큼, 한국 물건의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상승하여 더 많은 물품이 팔리게 된다.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Made in China 제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물가도 오르게 된다. 전제제품, 식용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 Made in China 제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환율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내외화를 해외로 모두 소비 지출하는 경우도 염두 해 볼 수가 있다. 두 국가가 한국의 국채와 채권, 주식 등을 대량 매입 할 경우 우리나라에 달러공급이 증가하고, 원화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일본과 중국의 소비지출대상이 원유가 된다면, 원유 값은 상승하고, 원자재를 사들이면 원자재 값이 상승 한다. 원유 및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의 환율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바와 같이 환율은 어느 특정

국가를 Target 으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여러 부분에 연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무형의 무기라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환율 역시 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세계경제체제를

볼 때 이마저도 수월치 않은 듯 하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을 예시로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간단히 살펴 보았다. 미국이 앞으로 재정적자를 얼마나 줄여서 경쟁력을 회복하느냐, 중국이 과연 이 시기를 틈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는 것도 세계경제 시장을 가능하는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 것 같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윤 순 형

shyoon@customsservice.co.kr

FTA News

한 EU FTA 내년 잠정발효의 배경과 시사점

□ 한 EU FTA,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

한국과 EU 는 지난해인 2009 년 7 월 협상을 타결한 뒤 같은 해 10 월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그 후 양측은 2010 년 9 월 정식서명-연내 잠정발효의 스케줄을 추진했지만, 자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꺼린 이탈리아의 반대¹에 부딪혔다. 하지만 EU 집행위와 한국 정부는 긴밀한 조율을 통해 당초 잠정 발효 시점을 2012 년 1 월까지 늦추기를 원했던 이탈리아의 반대 입장을 설득, 절충하여 결국 EU 특별외교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한-EU FTA 를 내년 7 월 1 일 잠정발효 시키기로 합의했다.

□ 잠정발효와 정식발효는 무슨 차이?

잠정발효는 정식발효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와 문화협력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며, 이 두 가지 내용은 EU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식발효까지는 EU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2~3 년이 더 걸리지만 잠정발효라고 하더라도 EU 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 협정문의 99%는 미리 발효가 되는 것이어서 정식발효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설명이다.

EU 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정식발효에 앞서 잠정발효를 적용해왔다.

□ 한 EU FTA 활용을 위한 필수요건 "인증수출자"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원산지판정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한 EU FTA 의 경우 기존의 한칠레, 한 EFTA, 한미 FTA 와 같은 자율발급체제²와는 달리 건별 6000 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 "인증수출자"에 국한하여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對 EU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득하여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크게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대별된다. 세관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하며,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이 일부 품목에 제한된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한다. 수출자의 원산지증명능력의 판단에는 수출자의 원산지 규정 이해수준, 수출물품과 부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원산지·비원산지 재료의 판정 및 가격 산정 정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품목별과 업체별 인증의 선택 시 고려사항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그 혜택범위와 요건이 다소 상이하다. 이에 인증수출자를 득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어느 종류의 인증을 받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업체가 많다. 물론 업체마다 인적관련현황, 경제적 여건 등 사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 지역으로 수출이 예상 되면 인증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한정된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 지역, 인도)로 수출하고 EU 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인증수출자라면 모든 것이 해결?

인증수출자를 득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출품목 / 모든 FTA 에 대해 원산지발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업체가 상당수이다. 물론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라면 100%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제도는 어디까지나 원산지 증명능력에 대해 인증을 받는 것으로서 인증 받은 사실만으로 수출하는 모든 모델·규격 제품의 원산지충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인증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서류를 면제해 주거나 한 EU F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와 원산지 사후검증은 별개의 사안이다.

다시 말해 인증수출자라고 해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추후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입증책임을 관세청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막론하고 수출자는 각 FTA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매건별 수출물품에 대해 업무매뉴얼 또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합한 원산지판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역내산 제품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향후 사후검증을 위하여 원산지 판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서류의 보관 등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준 혁

jlhlee@customsservice.co.kr

¹ 이탈리아의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사는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떨어진 경쟁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내부 구조조정 중인데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중소형 자동차들이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유럽 시장에 파고들 경우 더욱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입장

² FTA 에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만 발급하는 "기관발급체제"와 수출자가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체제"가 있다.

Voices From The Fields

세계최고의 부자인 빌게이츠부터, 세계적 대부호 록펠러 2 세, 미국최초의 억만장자 폴게티, 세계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 영화배우 전에 이미 백만장자였던 슈워제네거, 20 세기 최고의 경영자 잭 웰치, 온 집안이 억만장자인 월턴가족, 동아시아의 최고 갑부 리카싱,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이건희 그리고 인세만으로 억만장자가 된 조앤 롤링 이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부자가 되는 두 가지 비결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즉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

- 부자들의 자녀교육(방현철)을 읽고 -



제목이 끌려 집어 들었다. 부자들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다. 이 책은 세계최고의 부자인 빌게이츠부터, 세계적 대부호 록펠러 2 세, 미국최초의 억만장자 폴게티, 세계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 영화배우 전에 이미 백만장자였던 슈워제네거, 20 세기 최고의 경영자 잭 웰치, 온 집안이 억만장자인 월턴가족, 동아시아의 최고 갑부 리카싱,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이건희 그리고 인세만으로 억만장자가 된 조앤 롤링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이 부모에게 받은 교육방식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은 물론 십인십색이다. 하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는 어려서부터 “부자공식”에 대한 교육과 책 읽기였다.

첫째, 부자공식이란 한마디로 수입>지출이다. 즉 번 것 보다 적게 쓰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출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많이 벌던 적게 벌던 번 것 보다

적게 쓰고 남는 돈을 종자돈 삼아 다시 돈을 만들어내게 하는 투자의 메커니즘! 이들에게 이러한 원리는 보통사람들의 더하기 빼기만큼 상식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돈 쓰는 교육부터 받았고 그 결과 돈 잘 쓰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으며 아무리 큰돈이라도 써야 할 경우에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둘째로 이들은 모두 사업과 투자에 있어 남다른 통찰력을 가졌는데,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던 그들의 습관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분야를 뛰어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꿰들어보는 혜안을 갖게 해주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경험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이들 모두에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는 지식과 지혜를 제공한 것은 언제나 독서가 시작이었다. 미녀가 잠꾸러기라면 이들 부자는 모두 독서광이었다.

물론 이들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일을 하기 보다는 즐길 줄 알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꿈과 확신이 있었고, 자신들 보다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남달랐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부자 되는 공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 그리고 독서 광이라 불릴 만큼 책 읽기를 좋아한 것이 이들이 세계적인 부호가 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비결은 타고나지 않아도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자문단

자문위원 곽종우

jongwookwak@hanmail.net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통합공고 개정 등

□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10 년 10 월 12 일부터 개정 및 시행되는 해당 시행령은 배추파동으로 인한 국내 물가의 안정을 유도하고 있는 등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제 71 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 분의 40 을 넘지 아니하는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옥수수, 농약원료, 액화천연가스(LNG) 등 총 46 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제, 배추, 무 등 10 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세제 등 8 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8 퍼센트의 세율을 4 퍼센트 또는 6 퍼센트로, 배추와 무에 대해서는 현행 27 퍼센트 또는 30 퍼센트의 세율을 0 퍼센트로 각각 인하하여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2010 년 9 월 17 일에 개정되고 10 월 6 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원산지 둔감의 방지 및 원활한 관리업무를 유도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 원산지 세부표시방법 지정

-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우려가 많은 수입 천연 및 가공석 등 HS4 단위 13 개 물품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물품별로 현품이나 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 세부 표시방법을 지정하였으며, 포석, 연석, 판석, 가공한 비석, 건축용 석재는 바닥면에 날인(Stamping)하는 방식의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여 관련 수출입업체 및 단속기관의 원산지 표시업무의 원활한 통일적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입물품 원산지 판정권한 관세청장으로 일원화

- 종전 지식경제부장관과 관세청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원산지 판정업무를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해 통관전이나 통관후에도 원산지 판정 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업무를 지원하며 대외신뢰성의 제고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Assembled in 국가명" 원산지표시 적용 확대

-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인 "Made in 국가명" 외에 물품의 최종 조립국가와 대외무역 법령상의 원산지 국가가 동일한 경우 "Assembled in 국가명" 원산지표시 인정하여 원산지표시방법의 확대로 수출입기업의 원활한 원산지업무를 유도하고 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0 년 10 월 1 일에 개정되고 10 월 6 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시행령은 1) 국내 향만이나 공항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략물자등의 경우 또는 환적 허가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대외무역법 개정에 발맞추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경우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를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으로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2010 년 10 월 1 일에 개정되고 10 월 6 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고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과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한을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1. United States of America 를 USA 로, 2. Switzerland 를 Swiss 로, 3. Netherlands 를 Holland 로, 4. United kingdom 을 UK 로, 5. UK 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로 하는 등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였다.

□ 통합공고 개정

2010 년 10 월 1 일에 개정된 통합공고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수출입절차 사항을 반영하는 등 6 개부처 소관 법령관련 수입·수출요령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는 지식경제부관련 법령, 농림수산물부관련 법령, 국토해양부 관련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령, 환경부 관련 법령, 교육과학기술부관련 법령이 포함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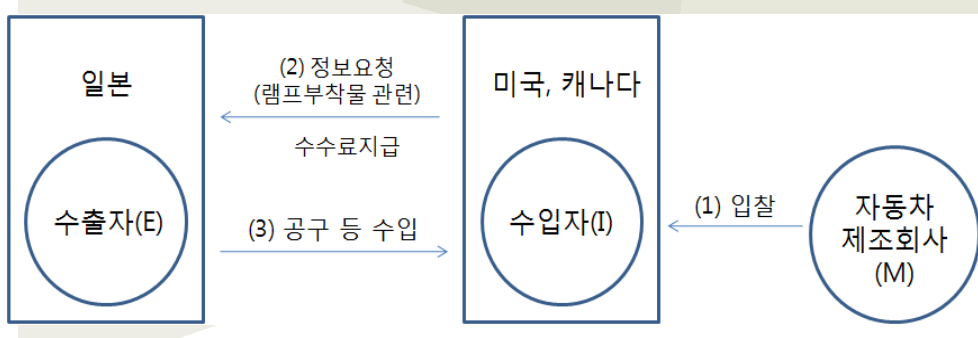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수수료가 실제지급가격 및 생산지원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HQ 547175 2000. 04. 21)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SAA 는 다음과 같은 circumstances of the sale 예시를 들고 있음.

첫째, 가격이 일반적 상관행에 따라 결정된 경우

둘째,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거래를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한 경우

셋째, 가격이 기업의 회계기간 동안 동종의 물품의 판매로부터 실현한 이윤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이 부인되지는 아니하며, 관세청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특수관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당성입증이 배제될 수 있음.

2. 사안검토

일반적으로 관세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보다 구체적인 제품별로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의 모든 수입물품은 APA 에 커버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국세의 결정을 위한 APA 에 관세청이 참가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자료를 관세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함.

□ 결정(Holding)

수입자 및 이와 관련한 공급자간의 거래에 따른 이전 가격은 적정하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 거래사실(Facts)

수입자는 일본에서 가정용품을 수입하여 미국시장에서 판매하며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음. 수입자는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본의 국세청을 포함하여 APA 를 신청하였음.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미국 및 일본 국세청에 신청한 APA 에 참여 하여 APA 에 따른 합의가 관세평가에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 한 바 있음.

2000 년 3 월, 수입자와 국세청은 APA 에 합의하였으며, 일본과 미국의 관련 당국은 일관된 APA 의 적용을 위하여 상호합의를 도출함.

1. 수입자의 주장

1)수출자와 수입자간 특수관계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APA 를 요청한 양 국가에 제출하였고 관련당국이 APA 의 적용을 위한 상호합의를 도출 하였으므로 관세평가에 있어서의 특수관계간의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위한 ① Circumstances of the Sale, ② Test Values 두 가지 테스트는 필요 없음을 주장함.

2) 따라서 과세관청이 circumstances of the sale test 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자료로 충분함을 주장함.

2. 과세관청의 주장

국세의 평가는 회계기간에 대한 거래를 총괄하여 평가하는 반면, 관세의 평가는 개별 수입 건 별로 평가하며 따라서 관세법과 국세의 평가목적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정상가격임을 확인하는 것은 동일하나 정상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양 세법간 차이가 있다고 주장.

수입자가 양국의 과세관청에 거래와 관련한 상당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는 동의 하나,

그러한 사실이 관세법령에 있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테스트가 필요 없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 쟁점(Issue)

수입자와 특수관계자가 있는 수출자간 거래에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평가가 적합하지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근거

수입되는 물품은 1 평가방법인 거래가격에 의해 평가되며. 거래가격은 미국에 수출되는 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 요소를 더한 금액.

특수관계인 거래관계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수입자와 수출자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만약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다음의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1) Circumstances of the Sale, or 2) Test Values.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세계는 하나



장승희 대표 관세사

33 명의 광부들이 지하 633m 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멀고 먼 나라 칠레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지구를 반 바퀴 돌아야 갈 수 있는 나라에서 발생한 사고소식에 전세계인은 애타는 마음으로 무사구조를 기도했습니다. 24 시간에 걸친 구조작업에서 광부 전원은 안전하게 구조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로 뭉친 전세계인의 간절한 마음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몰되어 있는 69 일 동안 매일 매시간 광부들의 근황을 TV 에서 컴퓨터에서 확인하며 전세계인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에 의한 실시간의 현장중계가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어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는 환을 갈등 또한 세계각국이 하나로 묶여 있는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각국의 경제가 단단한 톱니바퀴같이 맞 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경기부양에 집착하여 톱니바퀴를 역이용하려 하다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달된 문명, 확대되는 경제등의 영향으로 하나된 세계를 더욱 실감하는 작금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 고객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를 되뇌어 봅니다. 세계를 걱정하며 내 이웃을 보듬는 삶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봅니다.

이에 이번 Cover Story 는 우리모두의 관심인 환율전쟁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이 잘 지속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FTA News 는 한 EU FTA 활용을 위한 필수요건인 "인증수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 7 월에 발효가 되는 것이기에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필히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US Customs Valuation Ruling 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이전가격과 관련된 예규입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는 Becton Dickinson Korea(주) 대표이사 및 Hunin Tec(주) 대표를 역임하시고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자문단에 계시는 곽종우 자문위원께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서를 통한 통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가을! 독서의 계절에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한 책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가을이 우수수 가고 있습니다. 옷깃을 여미듯이 마음을 다독입니다. 내 이웃인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되어 돌아가는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 나가야겠다 다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 환율전쟁



윤순형 관세사 (shyoo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2 부
- 통관 2 부 팀장
- AEO T/F Team

FTA News- 한-EU FTA 내년 잠정 발효의 배경과 시사점



이준혁 관세사 (jh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장
- 기획재정부 FTA 동영상강의
- 최초민간 FTA 홈페이지 "FTAGATEWAY" 개설
- FTA Self Checking System 특허출원
- 현 FTA 활용포럼 멤버

Voices From The Fields-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



곽종우 자문위원 (jongwookwak@hanmail.net)

PROFILE

- 現)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자문단
- 前) HuninTec (주) 대표/상임고문
- 前) Becton Dickinson Korea (주) 대표이사
- 前) Pacific Consulting Firm (주) 선임컨설턴트 & 파트너

관세 법령 변경/ US Rulings 연재(6)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등



최지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